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025. 10.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목 차

Ⅰ.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 1

Ⅱ. 2025년 귀속 전산매체 변경내용 요약 ····· 2

Ⅲ.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 4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 26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 46

Ⅳ. 사업소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 65

Ⅴ.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안내

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81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 82
3.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관련 전산매체 변경내용 ·· 83

목 차

Ⅵ. Paperless 연말정산 안내

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및 API 소개 … 89
2. 전자문서 API 이용 안내 …… 89
3. 전자문서 API 종류 …… 91
4. 연말정산 공제자료 전자점자 문서 제공 …… 92
5. 연말정산 공제자료 일괄제공서비스 …… 93

<참고> 편리한 연말정산 …… 99

Ⅰ.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 개선내용

1.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①하는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다운로드 기능 미제공②

   ① '25년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25년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 자료 기준

   ②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제공

1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예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관계	성명	소득기준초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김원천	Y

1-1 부양가족 명세에서 제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본인	김근로	750101-1******	✓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김원천) 명단 제외			
자	김국세	980505-1******	✓

2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원천 차단

(예시) 신용카드 내역

사용자	상호	종류	공제대상금액
✓ 김근로	카드 주…	일반	2,656,020
	카드 주…	대중교통	3,700
김원천의 간소화자료 미제공			
✓ 김국세	카드 주…	대중교통	159,900
	주식회사 한…	일반	607,260

2.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를 간소화자료로 제공

|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간소화자료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소득발생 : 2024년 1월~6월)

도움말

전체

관계	성명	소득기준 초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김원천	Y

3. 홈택스에서 기본공제자 체크시 소득기준 초과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팝업 추가

| 연말정산 안내 팝업 문구 |

Ⅱ. 2025년 귀속 전산매체 변경내용 요약

※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별 레코드 수록요령 및 오류검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음영처리** 또는 **굵게(밑줄)**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내용에 대한 변경 내용은 정오표를 참조)

*** 전산매체제출요령 게시 위치**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자료실 →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게시번호: 1175)**

*** 전산매체제출요령 게시 종류**
- **근로소득(의료비포함)_전산매체제출요령, 사업연말(기부금명세서 포함)_전산매체제출요령**
- **연금계좌지급명세서_전산매체제출요령, 종교인소득연말(기부금명세서 포함)_전산매체제출요령**
- **퇴직소득지급명세서_전산매체제출요령, 거주기타_전산매체제출요령**
- **거주사업_전산매체제출요령, 부동산양도소득_전산매체제출요령**
- **비거주사업기타_전산매체제출요령, 연금소득(연말정산)_전산매체제출요령**
-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_전산매체제출요령**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_전산매체제출요령, 유가증권양도_전산매체제출요령**
- **비과세분리과세_전산매체제출요령, 이자배당소득_전산매체제출요령**

[참고] 비과세분리과세는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분리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주(현) · 종(전) 레코드

○ 비과세 항목수정 및 추가

–임원등 할인금액 항목 신설

○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한도 상향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2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 추가

○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부금 공제율 삭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구간 추가 및 공제한도 변경

○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소액 부징수 오차 허용 폐지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변경사항 없음

5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종료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6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소득명세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항목 추가

– 연금외수령 사유 - 주택차액등 반환 추가

Ⅲ.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1.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내용

(1)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개정취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종업원 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할인유형 > ❶ 자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 ❷ 임원등에게 자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❸ 임원등에게 계열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❹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 –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르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한 경우 등은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탑승권 등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 (비과세대상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 *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 (비과세대상 요건) ❶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❷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등 2년, 그 외 재화 1년 ❸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적용시기> 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양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공제금액 확대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좌 동)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적용시기> 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

<개정취지>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
○ (징수·납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좌 동)
○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 → 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근로자 공제율 축소 : 소득세액의 5%→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적용기한) 2024.12.31.	– (근로자) 20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적용시기>

○ (사업자 교부금 폐지 · 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025.2.28.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

(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종 전	개 정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 (좌 동)
<추 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개정취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적용대상) 종교관련 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좌 동)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유	– (좌 동)
<추 가>	– 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좌 동)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❶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❷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추 가></td><td>□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좌 동)

❸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대상자</td><td>▸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❶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❷ 기초연금수급자</td></tr>
<tr><td>대상 부동산</td><td>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주택·토지·건물)</td></tr>
<tr><td>납입한도</td><td>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td></tr>
<tr><td>납입기간</td><td>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td></tr>
<tr><td>사후관리</td><td>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td></tr>
</table>

※ ❷·❸ 합산 납입한도 : 생애누적 최대 1억원</td></tr>
</table>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개정취지>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좌 동)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좌 동)
<추 가>	–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좌 동)

<적용시기> 2025.2.2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범위 명확화
❶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❷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 (좌 동)
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 장애인증명서	○ (좌 동)
<추 가>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개정취지>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종 전	개 정
□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 (공제대상) 무주택자 ○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공제요건) ❶·❷·❸ 모두 충족 ❶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❷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좌 동)
<추 가>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❸ (좌 동)
<추 가>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적용시기> 2025.1.1.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도 적용

(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개정취지> 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600~2,000만원
<table><tr><th colspan="2">상환기간 15년 이상</th><th rowspan="2">상환기간 10년 이상</th></tr><tr><th>고정금리 O</th><th>고정금리 X</th></tr><tr><td>2,000만원</td><td>1,800만원</td><td>600만원</td></tr></table>
○ (거치기간) 없음

○ (공제요건) 상환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 매년 상환금액 :
$\frac{\text{차입금의 70\%}}{\text{상환기간 연수}}$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td><td>□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 (좌 동)

○ 1년 이내

○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 매년 상환금액 :
$\frac{\text{차입금의 100분의 70}}{\text{상환기간 연수}} \times \frac{\text{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12}$</td></tr>
</table>

(11)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개정취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종 전	개 정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연 3.5%	□ 이자율 하향 ○ 연 3.5% →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적용시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①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종 전	개 정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 A × B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 A × B − C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밴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C) 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

(1)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②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 (원칙)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투자지분 이전·회수 등 발생	○ (좌 동)
○ (예외) – 출자·투자자의 사망 – 세대 전원 해외이주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 예외사유 추가 – (좌 동)
<추 가>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지분 이전·회수

<적용시기> 2025.2.28. 이후 해산 또는 투자지분 이전·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2)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개정취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4.12.31.	○ 2027.12.31.

(3)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우수 해외인재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감면대상) ❶, 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❶, ❷, 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❶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 제공하는 자 * 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계약 ❷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외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교수 체류 자격등이 있는 자	○ (좌 동)
< 추 가 >	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적용시기> 2025.2.28. 이후 우수 해외인재 인증 받은 분부터 적용

(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개정취지>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적용기한 연장
❶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024.12.31.	○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 15% → 10% – 2027.12.31.
❷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ㅇ (좌 동)
○ (적용기한) 2024.12.31.	○ 2027.12.31.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개정취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종 전	개 정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고시에 위임)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신 설>	– (예외) 폐업·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 (감면율) – (청 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ㅇ (좌 동)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	
○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 20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농어업등 23개 업종)	□ 대상 업종 정비
○ 운수 및 창고업 <제 외>	○ (좌 동) - 「관세사법」 따른 통관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제 외>	○ (좌 동)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 외>	○ (좌 동) - 수의업
○ 부동산업 <제 외>	○ (좌 동) - 부동산 임대업

<적용시기> 20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개정취지> 고향사항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

종 전	개 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ㅇ (좌 동)
- (10만원 초과) (기부금-10만원) ×15%	- (10만원 초과) (기부금-10만원) ×15%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 (기부·공제한도) 5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8)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td><td>□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td></tr>
<tr><td>○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td><td>○ (좌 동)</td></tr>
<tr><td>○ (공제적용 소득) ❶ 또는 ❷

❶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❷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td><td>○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❶ (좌 동)
❷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td></tr>
<tr><td>○ (소득공제 한도)
<table>
<tr><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
<tr><td>4천만원~1억원</td><td>3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td><td>○ 소득공제 한도 상향
<table>
<tr><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
<tr><td>4천만원~6천만원</td><td>500만원</td></tr>
<tr><td>6천만원~1억원</td><td>4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td></tr>
</table>

<적용시기> 20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9)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취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확대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대상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적용시기>

○ (소득공제)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 과 세) 20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10)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11항, 제13항)

<개정취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 추징요건 등 합리화

종 전	개 정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제외사유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 또는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 추징	□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 (해지 6개월 이내)	○ (좌 동)
<추 가>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제외사유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계좌 해지 시 추징	□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 (해지 6개월 이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하기 위해 해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전환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기간 5년 초과 후 폐지	○ (좌 동)
<추 가>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 중도해지 사유	□ 중도해지 사유 추가
○ 주택 당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추 가>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저축자의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해지 6개월 이내)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필요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적용시기> 2024.11.12.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현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현 행	개 정 안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연장 ○ 2025.12.31.까지 가입분

(12)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 ○ (가산세)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이자상당액) 50만원 × ❶ × ❷ ❶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❷ 「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1일 0.022%)
<신 설>	□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절차) ❶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❷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table><tr><th>구 분</th><th>공제율</th></tr><tr><td>❶ 신용카드</td><td>15%</td></tr><tr><td>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table>–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td><td>□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td></tr>
<tr><td>○ (추가공제)
– (공제율)
<table><tr><th>항 목</th><th>공제율</th></tr><tr><td>❶ 전통시장 · 대중교통</td><td>40%</td></tr><tr><td>❷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영화관람료*
〈추 가〉</td><td>30%</td></tr></table>*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00만원</td><td>○ 추가공제 항목 추가
– (공제율)
<table><tr><th>항 목</th><th>공제율</th></tr><tr><td>❶ 전통시장 · 대중교통</td><td>40%</td></tr><tr><td>❷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td><td>30%</td></tr></table>*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좌 동)</td></tr>
<tr><td>○ (적용기한) 2025.12.31</td><td>○ (좌 동)</td></tr>
</table>

<적용시기> 2025.7.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

(14)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신 설>	□ 체육시설이용료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시설 및 대상금액 계산 기준 신설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공제대상)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계산기준) 시설이용료과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 -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

<적용시기> 20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table>
<tr><th>항목</th><th colspan="3">구 분</th><th>공제금액·한도</th><th colspan="3">공 제 요 건</th></tr>
<tr><td rowspan="10">인적공제</td><td colspan="3" rowspan="9">기본공제</td><td rowspan="9">1명당
150만원</td><td>구분</td><td>소득요건*</td><td>나이요건**</td></tr>
<tr><td>본인</td><td>×</td><td>×</td></tr>
<tr><td>배우자</td><td>○</td><td>×</td></tr>
<tr><td>직계존속</td><td>○</td><td>60세이상</td></tr>
<tr><td>형제자매</td><td>○</td><td>20세이하
60세이상</td></tr>
<tr><td>직계비속
(입양자 포함)</td><td>○</td><td>20세이하</td></tr>
<tr><td>위탁아동***</td><td>○</td><td>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td></tr>
<tr><td>수급자 등</td><td>○</td><td>×</td></tr>
<tr><td colspan="3">*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td></tr>
<tr><td rowspan="4">추가공제</td><td colspan="2">경로우대</td><td>1명당 100만원</td><td colspan="3">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td></tr>
<tr><td colspan="2">장애인</td><td>1명당 200만원</td><td colspan="3">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td></tr>
<tr><td colspan="2">부녀자</td><td>50만원</td><td colspan="3">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td></tr>
<tr><td colspan="2">한부모</td><td>100만원</td><td colspan="3">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td></tr>
<tr><td colspan="3">연금보험료 공제</td><td>전액</td><td colspan="3">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td></tr>
<tr><td rowspan="2">특별
소득공제</td><td rowspan="2">보험료</td><td>건강보험료</td><td>전액</td><td colspan="3">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td></tr>
<tr><td>고용보험료</td><td>전액</td><td colspan="3">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td></tr>
</table>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주 택 자 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①+주택마련 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31('25.3.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600만원~ 2,0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2.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2,0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600만원 - '12.1.1. 이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2,0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8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기타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29년 & 기타 : 1,000만원 · 상환기간 15년 미만 & 기타 : 6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23.12.31. 이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4.1.1.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의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2.1.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table>
<tr><th>항목</th><th>구 분</th><th>공제금액·한도</th><th>공 제 요 건</th></tr>
<tr><td rowspan="5">그 밖의
소득공제</td><td>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td><td>연 72만원
한도</td><td>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td></tr>
<tr><td>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td><td>연 600, 500, 400,
200만원 한도</td><td>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td></tr>
<tr><td>주택마련
저축공제</td><td>연 4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td><td>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td></tr>
<tr><td>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td><td>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
출자:100%·70%·30%)</td><td>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td></tr>
<tr><td>신용카드 등
소득공제</td><td>(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40%</td><td>· 공제율
<table><tr><th>구 분</th><th>비고</th></tr><tr><td>① 신용카드</td><td>15%</td></tr><tr><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tr><td>③ 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련단련장* 등</td><td>30%</td></tr><tr><td>④ 전통시장</td><td>40%</td></tr><tr><td>⑤ 대중교통</td><td>40%</td></tr></table>* '25.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나이 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한도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총급여 7천만원</th></tr><tr><th>이하자</th><th>초과자</th></tr><tr><td>신용카드 공제 한도(㉠+㉡)</td><td>600만원</td><td>450만원</td></tr><tr><td>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able></td></tr>
<tr><td>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td><td>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td><td>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 분</th><th>공제금액·한도</th><th>공 제 요 건</th></tr>
<tr><td rowspan="3">그 밖의
소득공제</td><td>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td><td>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천만원)</td><td>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td></tr>
<tr><td>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td><td>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td><td>'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td></tr>
<tr><td>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td><td>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td><td>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4년 이하이면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내인 적립식 저축을 '25.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공제</td></tr>
<tr><td colspan="2">소득공제 종합한도</td><td>연 2,500만원</td><td>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td></tr>
<tr><td>세액
감면
·
세액
공제</td><td>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td><td>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td><td>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12.1.1. ~ '26.12.31.까지 취업(경력단절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13년 취업청년 : 100%
- '14~'15년 취업자 : 50%
- '16~'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table>
<tr><th>구분</th><th>요건</th></tr>
<tr><td>청년</td><td>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td></tr>
<tr><td>고령자</td><td>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td></tr>
<tr><td>장애인
등</td><td>「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td></tr>
<tr><td>경력
단절
근로자</td><td>①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 제공
②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
③퇴직한 날부터 2~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 colspan="2">구 분</th><th>공제금액·한도</th><th>공 제 요 건</th></tr>
<tr><td rowspan="7">세액
감면
·
세액
공제</td><td colspan="2">근로소득
세액공제</td><td>20만원(50만원,
66만원, 74만원)
한도</td><td>
<table>
<tr><th>산출세액</th><th>공제금액</th></tr>
<tr><td>130만원 이하</td><td>55%</td></tr>
<tr><td>130만원 초과</td><td>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tr>
</table>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1/2]
→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
</td></tr>
<tr><td>혼인
세액
공제</td><td>혼인신고를
한 거주자</td><td>50만원</td><td>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적용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 분</td></tr>
<tr><td rowspan="2">자녀
세액
공제</td><td>기본공제대상
자녀(8세이상)</td><td>-</td><td>
<table>
<tr><th>공제대상자녀</th><th>공제금액</th></tr>
<tr><td>1명</td><td>연 25만원</td></tr>
<tr><td>2명</td><td>연 55만원</td></tr>
<tr><td>3명 이상</td><td>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td></tr>
</table>
※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대상에 포함
</td></tr>
<tr><td>출산·입양</td><td>-</td><td>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td></tr>
<tr><td rowspan="3">연
금
계
좌</td><td>연금저축</td><td rowspan="3">
<table>
<tr><th>총급여액</th><th>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th>공제율</th></tr>
<tr><td>5.5천만원
이하</td><td rowspan="2">600만원
(900만원)</td><td>15%</td></tr>
<tr><td>5.5천만원
초과</td><td>12%</td></tr>
</table>
</td><td>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납입한도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은 900만원 한도)</td></tr>
<tr><td>퇴직연금</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td></tr>
<tr><td>과학기술인
공제</td><td>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td></tr>
<tr><td colspan="2">ISA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td><td>
<table>
<tr><th>총급여액</th><th>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th><th>공제율</th></tr>
<tr><td>5.5천만원
이하</td><td rowspan="2">추가납입액×10%
(300만원 한도)</td><td>15%</td></tr>
<tr><td>5.5천만원
초과</td><td>12%</td></tr>
</table>
</td><td>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ISA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도에만 적용</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 colspan="3">구 분</th><th>공제금액·한도</th><th>공 제 요 건</th></tr>
<tr><td rowspan="10">세액
감면
·
세액
공제</td><td rowspan="10">특
별
세
액
공
제</td><td colspan="2">보장성보험료</td><td>보험료 납입액× 12%
(연 100만원 한도)</td><td>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td></tr>
<tr><td colspan="2">장애인
보장성보험료</td><td>보험료 납입액× 15%
(연 100만원 한도)</td><td>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td></tr>
<tr><td rowspan="4">의
료
비</td><td>㉠
난임시술비</td><td rowspan="4">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20%·30%)**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율 적용</td><td rowspan="4">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요건 폐지('24.1.1.~)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24.1.1.~)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24.1.1.~)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table><tr><th>구 분</th><th>의료비 공제금액</th></tr><tr><td>가. ㉣ ≥ 총급여액 × 3%인 경우</td><td>㉠ +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td></tr><tr><td>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td><td>㉠ + ㉡ + ㉢- (총급여액 × 3% - ㉣)</td></tr><tr><td>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td><td>㉠ + ㉡ - (총급여액 × 3%- ㉢ - ㉣)</td></tr><tr><td>라. ㉠ + ㉡ + ㉢ + ㉣ ≥ 총급여액× 3% 〉 ㉡ + ㉢ + ㉣인 경우</td><td>㉠ - (총급여액 × 3% - ㉡ - ㉢ - ㉣)</td></tr></table>※ ㉠,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td></tr>
<tr><td>㉡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td></tr>
<tr><td>㉢본인·
65세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td></tr>
<tr><td>㉣그 외
부양가족</td></tr>
<tr><td rowspan="5">교
육
비</td><td>취학전 아동</td><td rowspan="5">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23년귀속분부터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td><td rowspan="3">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td><td>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td></tr>
<tr><td>초등학생
중·고등
학생</td><td>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td></tr>
<tr><td>대학생</td><td>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td></tr>
<tr><td>근로자 본인</td><td colspan="2">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td></tr>
<tr><td>장애인
특수교육비</td><td colspan="2">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td></tr>
</table>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이월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한도: 2,000만원)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이월공제×)
				10만원 초과	(기부금 - 10만원) ×15% * 특별재난지역: 30%	
			특례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공제대상 한도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일반(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월공제×)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3%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3% 공제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월할계산)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 → 이월공제 가능)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7%) ⇒ * 한도: 연간 1천만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한 경우에 공제 가능

참고자료 세액 감면 · 공제 적용 순서

□ 세액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차입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④) 특례기부금을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2013년에 지급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 먼저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⑨)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특별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서로 적용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참고자료 기부금 소득 · 세액공제 적용방법

□ 기부금 소득공제 · 세액공제 계산 방법

※ 기부금 관련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공제 구분	공제 항목	내 용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	

(1) 다음의 순으로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계산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고향사랑기부금
③ 특례기부금(2015~2025년 지출분)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⑤ 일반기부금(2015~2025년 지출분)

(2) 다음의 순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고향사랑기부금 → ② 이월 특례기부금(2015~2024) → ③ 당해연도 특례기부금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⑤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15~2024) → ⑥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⑦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15~2024) → ⑧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3)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액 한도 및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입력 항목			입력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정치 자금 기부금	소계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0원 ㉠ + ㉡ + ㉢	0원 ⓐ + ⓑ + ⓒ
	10만원 이하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10만원)	ⓐ 0원 대상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소계	0원		0원 ㉡ + ㉢	0원 ⓑ + ⓒ
		10만원 ~3천만원	0원		㉡ 0원 Max{Min(입력금액,한도 금액,3천만원)-10만원, 0}	ⓑ 0원 대상금액 × 15%
		3천만원 초과	0원		㉢ 0원 Max{Min(입력금액,한도 금액)-3천만원, 0}	ⓒ 0원 대상금액 × 25%
②고향 사랑 기부금	소계		0원	0원 2,000만원	0원 ㉠ + ㉡	0원 ⓐ + ⓑ
	10만원 이하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10만원)	ⓐ 0원 대상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0원		㉡ 0원 Max{Min(입력금액,한도 금액,2천만원)-10만원, 0}	ⓑ 0원 (대상금액 - 10만원) × 15/100* * 특별재난지역 : 30/100
③특례 기부금	소계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①공제대상금액 -②공제대상금액	0원 ㉠ + ㉡ + ㉢ + ㉣ + ㉤ + ㉥ + ㉦	0원 ⓐ + ⓑ + ⓒ + ⓓ + ⓔ + ⓕ + Ⓖ
	'15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3천만원 이하 : 15% ㉯ 3천만원 초과 : 25%
	'16~'18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30%
	'19~'20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21~'22년 이월분		0원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 : 35%
	'23년 이월분		0원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입력 항목			입력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4년 이월분	0원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24.12.31.까지)
		당기	0원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④우리사주조합기부금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30%	0원 Min(입력금액, 한도)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⑤일반 기부금	소계		0원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④공제대상금액) × 30%	0원 ㉠ + ㉡ + ㉢ + ㉣ + ㉤ + ㉥ + ㉦	0원 ⓐ + ⓑ + ⓒ + ⓓ + ⓔ + ⓕ + Ⓖ
	종교 단체외 기부금	'15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3천만원 이하 : 15% ㉯ 3천만원 초과 : 25%
		'16~'18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30%
		'19~'20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21~'22년 이월분	0원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 : 35%
		'23년 이월분	0원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24년 이월분	0원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24.12.31.까지)

입력 항목			입력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당기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소계		0원		0원 ㉠ + ㉡ + ㉢ + ㉣+ ㉤ + ㉥+ ㉦	0원 ⓐ + ⓑ + ⓒ + ⓓ + ⓔ + ⓕ + Ⓖ
	종교 단체 기부금	’15년 이월분	0원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④공제대상금액) × 10% + Min{(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④공제대상금액) ×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3천만원 이하 : 15% ㉯ 3천만원 초과 : 25%
		’16～’18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30%
		’19～’20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21～’22년 이월분	0원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 : 35%
		’23년 이월분	0원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24년 이월분	0원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24.12.31.까지)
		당기			㉦ 0원 Min (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4) 지급명세서 기재 방법

1)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기재

2) 세액공제액 :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초과분 구분 기재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의 각 항목별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기재

(5) 기부금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시점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받지 못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은 차기 이월됨

사례) 소득금액 71,000,000원, 기부금액 전체 5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원

(1) 기부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이월액 계산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구 분		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초과 이월액
특례	당기	5,000,000	71,000,000	5,000,000	
	'23년이월	3,000,000		3,000,000	
	'24년이월	2,000,000		2,000,000	
우리사주		20,000,000	18,300,000	18,300,000	
일반 종교외	당기	3,000,000	12,270,000	3,000,000	
	'23년이월	2,000,000		2,000,000	
	'24년이월	3,000,000		3,000,000	
일반 종교	당기	5,000,000			5,000,000
	'23년이월	4,000,000		4,000,000	
	'24년이월	3,000,000		270,000	2,730,000
합 계		50,000,000		40,570,000	7,730,000

(2)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시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액(예시) : 세액 8,190,000원

※ 세액공제가능액 = 산출세액 - (적용순서의 세액감면～월세액 세액공제까지의 합계)
= 10,000,000 -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혼인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3) 공제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액(8,190,000원) 까지의 세액공제액을 계산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공제금액	공제율	세액공제액	공제초과 이월액
특례	당기	5,000,000	5,000,000	15%	750,000	
	'23년이월	3,000,000	3,000,000	15%	450,000	
	'24년이월	2,000,000	2,000,000	15%	300,000	
우리사주		18,300,000	18,300,000	30%	5,490,000	
일반 종교외	당기	3,000,000	0	-	0	3,000,000
	'23년이월	2,000,000	2,000,000	30%	600,000	
	'24년이월	3,000,000	2,000,000	30%	600,000	1,000,000
일반 종교	'23년이월	4,000,000	0	-	0	4,000,000
	'24년이월	270,000	0	-	0	270,000
합 계		40,570,000	32,300,000		8,190,000	8,270,000

(4) 이월액 = 16,000,000원(한도초과이월액 7,730,000원, 공제초과이월액 8,270,000원)

참고자료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1. 임원등이 지급받는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 MAX(①,②)

① 임원등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② 연간 240만원

2.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적용 사례

○ (사례1) A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4,000만원)의 25% 할인, 종업원 甲은 25% 할인받아 3,000만원에 구매함

→ 甲의 할인금액(1,00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800만원

→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8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 근로소득 과세

○ (사례2) B전자제품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300만원)의 30% 할인, 종업원 乙은 30% 할인받아 210만원에 구매함

→ 乙의 할인금액(9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240만원

→ 할인금액이 비과세 한도(240만원)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

참고자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Q-1) 청년 甲이 2022.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25.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024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한도 200만원) 감면을 적용

○ A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 ○ B회사 총급여액 : 25,000,000원 ○ 산출세액 : 1,000,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550,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총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비율}
= {1,000,000원 × (45,000,000/45,000,000 × 90%)} = **900,000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감면비율***)
= 550,000원 × (1 - 900,000/1,000,000) = **55,000원**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Q-3)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음.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3)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19.1.1.부터 적용)

※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Q-4)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여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A-4)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함

(예시) 2022년 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24년 4월 퇴사하고 1년간 휴직 이후 2025년 4월 B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간(2022.4월~2027.4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Q-5)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관할세무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A-5) 이전 중소기업체에서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날부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함

(예시) 2024년 1월 A중소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2025년 2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감면받은 경우 ⇒ 재취업일로부터 5년간(2025.2월~2030.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Q-6) 본점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점의 업종이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A-6) 지점사업장이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본점의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함

Q-7)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되고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초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7)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이 배제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5년 기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개정안 반영)

구 분	입력금액	최저사용금액	공제비율	공제제외금액	공제가능금액	공제한도	일반공제금액	추가공제금액	최종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제외)		총급여액 × 25%	15%	아래 참조①	(㉮×15% + (㉯+㉰)×30% + (㉱+㉲)×40% − 공제제외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사용금액 이상일 때)	아래 참조②	min[공제가능금액, 공제한도]	아래 참조③	일반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제외)			30%						
㉰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0%						
㉱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40%						
㉲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40%						

① [공제제외금액] 산출방법

구 분	계산식
신용카드사용금액(㉮)≥**최저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금액(㉮)	㉮ × 15% + (최저사용금액 − ㉮) ×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15% + (㉯ + ㉰) × 30% + (최저사용금액 − ㉮ − ㉯ − ㉰) × 40%

②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③ [추가공제금액] 산출방법 = (㉠ + ㉡ + ㉢)

㉠ 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	Min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음수이면 "0"),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문화체육 추가공제 없으므로 한도 200만원
㉡ 대중교통 추가공제금액	
㉢ 문화체육 추가공제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초과자)의 추가공제한도는 300만원(200만원)

사 례

【문】 총급여액 6,8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4,300만원 사용)

구 분	사 용 액
신용카드	3,200만원(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8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 포함)
체크카드	300만원(도서·공연 50만원, 수영장 이용료 50만원 포함)
총 계	**4,300만원**

【해설】

1.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4,300만원이 총급여의 25%(1,700만원)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635만원**
   ① 신용카드사용분 = (3,200만원-200만원) × 15% = **450만원**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이용분 제외)
   = (800만원-300만원) × 30% + (300만원-100만원) × 30% = **210만원**
   ③ 문화체육 사용분 = 100만원 × 30% = **30만원**
   ④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40% = **80만원**
   ⑤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원 × 40% = **120만원**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3. 공제한도 = **53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 + 추가공제[min(335만원*, (30만원+80만원+120만원), 300만원)]
   * 635만원(공제가능금액) - 300만원(공제한도액) = 335만원(한도초과액)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2, 3) = **530만원**

신 용 카 드 등 소 득 공 제 신 청 서

거주자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 구분	⑤ 소계 (⑥+⑦+⑧+⑨+⑩+⑪)	⑥ 신용카드	⑦ 직불·선불카드 등	⑧ 현금 영수증	⑨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⑩ 전통시장 사용분	⑪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계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⑬ 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금액 (⑨×30%)	⑮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40%)	⑯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40%)	⑰ 공제제외금액 계산		
					⑰-1 총급여	⑰-2 최저 사용금액 [(⑰-1)×25%]	⑰-3 공제 제외금액

⑱ 공제가능 금액 [⑫+⑬+⑭+⑮+⑯ -(⑰-3)]	⑲ 공제 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300만원, 250만원]	⑳ 일반 공제금액 (⑱과 ⑲ 중 적은 금액)	㉑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체육 추가공제액 계산			㉒ 추가공제 금액 합계 {(⑱-⑲),(㉑-3) 중 적은 금액}	㉓ 최종 공제금액 (⑳+㉒)
			㉑-1 추가공제 가능금액 [⑱ >⑲인 경우 (⑭+⑮+⑯)과 (⑱-⑲)중 적은 금액]	㉑-2 추가공제 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300만원, 200만원]	㉑-3 추가공제금액 {(㉑-1)과 (㉑-2)중 적은 금액}		

⑰-3 계산

구분	계산식	⑰-3
⑥ ≥ (⑰-2)	(⑰-2)×15%	
⑥ + ⑦ + ⑧ + ⑨ ≥ (⑰-2) > ⑥	⑥×15% + {(⑰-2)-⑥}×30%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⑰-2) > ⑥ + ⑦ + ⑧ + ⑨	⑥×15% + (⑦+⑧+⑨×30%) + {(⑰-2)-⑥-⑦-⑧-⑨}×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에는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에는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⑨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⑥ 신용카드"란부터 "⑪ 대중교통이용분"란까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선불카드등"란, "⑨ 문화체육사용분"란, "⑩ 전통시장사용분"란 및 "⑪ 대중교통이용분"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⑩, ⑪, ⑫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⑧ 현금영수증"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7.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⑰-1 총급여"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⑳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⑳ 공제한도액"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50만원입니다.
11. 문화체육사용분과 문화체육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체육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12. ㉒-2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2025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	구 분		공제액 ·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 · 고용 · 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600만원 ~ 2,000만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600, 500, 400,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40%	○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 (다만, 조특법 §16조① 3,4,6호에 따른 출자 · 투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0만원* + Min[(문화체육사용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1. [공통] 전산매체 파일 길이 변경
 - A~I레코드: 2,010바이트(2024년 귀속: 2,010바이트)

1. [비과세] (신설)임원 등 할인제도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60	⑱-41 W01- 임원 등 할인제도	·[소득세법 제12조 3호 처목]의 소득 종업원이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구매한 금액으로서 시가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MAX = (할인 구매한 재화·용역 시가의 20%, 연간 240만원) * 위 기준을 초과하는 할인금액 또는 2년(재화·용역의 종류에 따라 1년)내에 재판매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상여** 금액에 포함하여 작성 (∵ 근로를 제공하고 비정기적으로 받는 대가)	임원 등 할인제도(W01) < 0 이면 오류

2.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한도 상향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02	㊳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2016년 가입분부터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함) -공제금액: 납입액 전액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500만원 6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4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1.[C102]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02]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02] ≠ 0 이면 오류 4.[C78]≦ 4천만 원인 경우: [C102] > 600만 원이면 오류 [C78] > 4천만 원이고 [C78] <= 6천만 원인 경우: [C102] > 500만 원이면 오류, [C78] > 6천만 원이고, [C78] <= 1억인 경우: [C102] > 400만 원이면 오류 [C78] > 1억인 경우: [C102] > 200만 원이면 오류
C103	㊴-㉮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_청약저축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09.12.31이전 가입자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1.[C103]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03]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03] ≠ 0 이면 오류 4.세대원([C15]='2')인 경우: [C103] ≠ 0 이면 오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다만, 저축 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함)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금액 : 납입금액의 40%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3)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103+항목104+항목105) 합하여 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종합한도 적용	5.[C103] > 120만 원이면 오류 6.[C76] > 7,000만 원인 경우: [C103] ≠ 0 이면 오류 7.[C76] > 7,000만 원인 경우: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청약저축(소득공제구분='31') 자료가 존재하면 오류 8.[C103] >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청약저축(소득공제구분='31')의 공제금액 합계} 이면 오류 9.[C93] + [C103 + C104 + C105] > 400만 원 이면 오류
C104	㊴-㉯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_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본인 명의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액 -300만원 납입액 한도 ·공제금액: 납입금액의 40%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3)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103+항목104+항목105) 합하여 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종합한도 적용	1.[C104]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4.세대원([C15]='2')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5.[C104] > 120만원 이면 오류 6.[C76] > 7,000만원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7.[C76] > 7,000만원인 경우: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구분='32') 자료가 존재하면 오류 8.[C104] >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구분='32')의 공제금액 합계} 이면 오류 9.[C93] + [C103 + C104 + C105] > 400만 원이면 오류
C105	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_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법률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저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함) ·공제금액: 납입금액의 40%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3)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103+항목104+항목105) 합하여 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종합한도 적용	1.[C105]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05]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05] ≠ 0 이면 오류 4.세대원([C15]='2')인 경우: [C105] ≠ 0 이면 오류 5.[C105] > 72만원 이면 오류 6.[C105] >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구분='34')의 공제금액 합계} 이면 오류 7.[C93] + [C103 + C104 + C105] > 400만 원 이면 오류

3.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03	㊴-㉮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_청약저축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09.12.31이전 가입자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다만, 저축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함)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금액 : 납입금액의 40%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3)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103+항목104+항목105) 합하여 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종합한도 적용	1.[C103]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03]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03] ≠ 0 이면 오류 4.세대원([C15]='2')인 경우: [C103] ≠ 0 이면 오류 5.[C103] > 120만 원이면 오류 6.[C76] > 7,000만 원인 경우: [C103] ≠ 0 이면 오류 7.[C76] > 7,000만 원인 경우: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청약저축(소득공제구분='31') 자료가 존재하면 오류 8.[C103] >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청약저축(소득공제구분='31')의 공제금액 합계} 이면 오류 9.[C93] + [C103 + C104 + C105] > 400만 원이면 오류
C104	㊴-㉯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_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본인 명의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액 -300만원 납입액 한도 ·공제금액: 납입금액의 40%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3)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103+항목104+항목105) 합하여 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종합한도 적용	1.[C104]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4.세대원([C15]='2')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5.[C104] > 120만원 이면 오류 6.[C76] > 7,000만원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7.[C76] > 7,000만원인 경우: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구분='32') 자료가 존재하면 오류 8.[C104] >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구분='32')의 공제금액 합계} 이면 오류 9.[C93] + [C103 + C104 + C105] > 400만 원이면 오류
C105	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_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저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함) ·공제금액: 납입금액의 40%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3)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103+항목104+항목105) 합하여 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종합한도 적용	1.[C105]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05]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05] ≠ 0 이면 오류 4.세대원([C15]='2')인 경우: [C105] ≠ 0 이면 오류 5.[C105] > 72만원 이면 오류 6.[C105] >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구분='34')의 공제금액 합계} 이면 오류 7.[C93] + [C103 + C104 + C105] > 400만 원이면 오류

3.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25 ⓑ	㊼-㉮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인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1명: 25만원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2명: 55만원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55만원 + (자녀세액공제인원-2) × 40만원	1.[C125ⓑ]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25ⓑ]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25ⓑ] ≠ 0 이면 오류 4.[C125ⓐ] = 1인 경우: [C125ⓑ] > 25만원이면 오류 [C125ⓐ] = 2인 경우: [C125ⓑ] > 55만원 이면 오류 [C125ⓐ] ≧ 3인 경우: [C125ⓑ] > 55만원 + ([C125ⓐ] - 2) × 40만원 이면 오류 5.[C125ⓑ] > [C116] - [C122] 이면 오류
C137 ⓐ	㊹-㉯특별세액공제_기부금_고향사랑기부금_10만원이하_공제대상금액(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근로소득자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일반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 대상금액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한도계산 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포함	1.[C137ⓐ]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7ⓐ]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37ⓐ] ≠ 0 이면 오류 4.[C137ⓐ] > 10만원이면 오류 5.[C137ⓐ] > [C78] - [C135ⓐ] - [C136ⓐ] 이면 오류 6.{[C137ⓐ]+[C138ⓐ]+[C139ⓐ]}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이면 오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기부금조정명세(H레코드) 중 고향사랑기부금([H9]='43', [H9]='44' and [H10]='2025') 해당 연도 공제금액([H15])
C137 ⓑ	㊹-㉯특별세액공제_기부금_고향사랑기부금_10만원이하_세액공제액(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최대 90,909원)	1.[C137ⓑ]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7ⓑ]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37ⓑ] ≠ 0 이면 오류 4.[C137ⓑ] > [C137ⓐ] × 100 / 110 이면 오류 5.[C137ⓑ] > 90,909원 이면 오류 6.[C137ⓑ] > [C116- C122- C123 - C124 - C125ⓑ - C126ⓑ - C131ⓑ - C132ⓑ - C133ⓑ - C134ⓑ-C135ⓑ-C136ⓑ]이면 오류
C138 ⓐ	㊹-㉯특별세액공제_기부금_고향사랑기부금_10만원초과(특별재난지역)_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자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 대상금액 -공제한도: Min(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이하분), 2000만원-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이하분))	1.[C138ⓐ] < 0 이면 오류 2.[C137ⓐ + C138ⓐ + [C139ⓐ]] > 2000만원 이면 오류 3.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8ⓐ] ≠ 0 이면 오류 4.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38ⓐ] ≠ 0 이면 오류 5.[C138ⓐ] > [C78] - [C135ⓐ] - [C136ⓐ] - [C137ⓐ] 이면 오류 6.{[C137ⓐ]+[C138ⓐ]+[C139ⓐ]}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이면 오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기부금조정명세(H레코드) 중 고향사랑기부금([H9]='43', [H9]='44' and [H10]='2025') 해당 연도 공제금액([H15]) 7.[C138ⓐ] > H레코드 중 고향사랑기부금([H9]='44' AND [H10]='2025') 해당 연도 공제금액([H15])이면 오류

C138ⓑ	⑥④-㉯특별세액공제_기부금_고향사랑기부금_10만원초과(특별재난지역)_세액공제액	·(특별재난지역)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세액공제	1.[C138ⓑ]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8ⓑ]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38ⓑ] ≠ 0 이면 오류 4.[C138ⓑ] > [C138ⓐ] × 30% 이면 오류 5.[C138ⓑ] > [C116- C122 - C123 - C124- C125ⓑ - C126ⓑ - C131ⓑ - C132ⓑ - C133ⓑ - C134ⓑ -C135ⓑ-C136ⓑ-C137ⓑ]이면 오류
C139ⓐ	⑥④-㉯특별세액공제_기부금_고향사랑기부금_10만원초과(일반)_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자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대상금액 -공제한도: Min(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이하분) - (특별재난지역)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초과분), 2000만원-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이하분) - (특별재난지역)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초과분))	1.[C139ⓐ] < 0 이면 오류 2.[C137ⓐ + C138ⓐ + C139ⓐ] > 2000만 원 이면 오류 3.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9ⓐ] ≠ 0 이면 오류 4.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39ⓐ] ≠ 0 이면 오류 5.[C139ⓐ] > [C78] - [C135ⓐ] - [C136ⓐ] - [C137ⓐ] - [C138ⓐ] 이면 오류 6.{[C137ⓐ]+[C138ⓐ]+[C139ⓐ]}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이면 오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기부금조정명세(H레코드) 중 고향사랑기부금([H9]='43', [H9]='44' and [H10]='2025') 해당 연도 공제금액([H15])
C139ⓑ	⑥④-㉯특별세액공제_기부금_고향사랑기부금_10만원초과(일반)_세액공제액	·(일반)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세액공제	1.[C139ⓑ]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9ⓑ]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39ⓑ] ≠ 0 이면 오류 4.[C139ⓑ] > [C139ⓐ] × 15% 이면 오류 5.[C139ⓑ] > [C116- C122 - C123 - C124- C125ⓑ - C126ⓑ - C131ⓑ - C132ⓑ - C133ⓑ - C134ⓑ -C135ⓑ-C136ⓑ-C137ⓑ-C138ⓑ]이면 오류

4. 종전근무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D49	⑱-41 W01-임원 등 할인제도	·[소득세법 제12조 3호 처목]의 소득 종업원이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구매한 금액으로서 시가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MAX = (할인 구매한 재화·용역 시가의 20%, 연간 240만원) * 위 기준을 초과하는 할인금액 또는 2년(재화·용역의 종류에 따라 1년)내에 재판매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상여 금액에 포함하여 작성 (∵ 근로를 제공하고 비정기적으로 받는 대가)	임원 등 할인제도(W01) < 0 이면 오류

관리 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해당1 / 미해당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해당1 / 미해당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해당1 / 미해당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세대주의 배우자3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해당1 / 미해당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소			

I. 근무처별 소득명세	구분	주(현)	종(전)	종(전)	⑯-1 납세조합	합계
	⑨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여					
	⑭ 상여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⑱ 국외근로	MOX					
	⑱-1 야간근로수당	OOX					
	⑱-2 보육수당	QOX					
	⑱-3 출산지원금	QOX					
	⑱-4 연구보조비	HOX					
	⑱-5						
	~						
	⑱-41 임원등 할인금액	W01					
	⑲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III. 세액명세	구분			⑲소득세	⑳ 지방소득세	㉑ 농어촌특별세
	㉓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㉔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㉕ 주(현)근무지				
	㉖ 납부특례세액					
	㉗ 차감징수세액(㉓-㉔-㉕-㉖)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Ⅳ. 정산명세	종합소득공제		㉑ 총급여(⑯, 외국인 단일 세율 적용 시 연간 근로소득)		
			㉒ 근로소득공제		
			㉓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㉔ 본인		
			㉕ 배우자		
			㉖ 부양가족(명)		
		추가공제	㉗ 경로우대(명)		
			㉘ 장애인(명)		
			㉙ 부녀자		
			㉚ 한 부 모 가 족		
		연금보험료공제	㉛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 군인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특별소득공제	㉝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공제금액	
			㉯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㉞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대출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㉟ 계		
	㊱ 차감소득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	㊲ 개인연금저축			
		㊳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㊴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㊵ 투자조합출자 등			
		㊶ 신용카드등 사용액			
		㊷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㊸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㊺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㊻ 그 밖의 소득공제 계			
	㊼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㊽ 종합소득 과세표준				
㊾ 산출세액				
세액감면	㊿ 「소득세법」			
	(51) 「조세특례제한법」(52 제외)			
	(5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3) 조세조약			
	(54) 세액감면 계			
세액공제	(55) 근로소득			
	(56) 혼인세액공제			
	(57)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출산·입양자 (명)		
	연금계좌 (5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0)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0)-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61)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2)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3)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4)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일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5) 계			
	(66) 표준세액공제			
	(67) 납세조합공제			
	(68) 주택차입금			
	(69) 외국납부			
	(70)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71) 세액공제 계			
(72) 결정세액(㊾-(54)-(71))				
(82) 실효세율(%) ((72)/㉑)×100				

㊽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혼인세액공제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특수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자료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문화체육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해당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해당1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1에서 해당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6.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⑳ 비과세소득 계"란 및 "⑳-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현)란]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⑯-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㊻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㉑ 총급여"란: "⑯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⑯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㉝~㉞)"란 및 "그 밖의 소득공제(㊲~㊻)"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10. "연금계좌(㊽~㊿-1)"란 및 "특별세액공제(⑥1~⑥5)"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작 성 방 법

10. "㊼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란: ㉞ 주택자금공제(㉮+㉯), ㊳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㊴ 주택마련저축(㉮+㉯+㉰), ㊵ 투자조합출자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㊶ 신용카드등 사용액, ㊷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㊽ 종합소득 과세표준"란: ㊱ 차감소득금액에서 ㊻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㊼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㊻ 납부특례세액"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㊷ 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리며, ㊼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㊽ 소득・세액공제 명세"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장애인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마.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사.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아. 의료비(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세이하 ·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㉞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0.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문화체육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1.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체육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나목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라목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월 150만원 한도)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바목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으로 한정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아목	G01	⑱-5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H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및 제3호(식료·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및 제8호(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⑱-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⑱-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⑱-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⑱-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⑱-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나목(연구보조비 등)	○
		H10	⑱-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다목(연구보조비 등)	○
		H14	⑱-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가목(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⑱-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나목(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⑱-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4호(취재수당)	○
		H12	⑱-7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벽지수당)	○
		H13	⑱-8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6호(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⑱-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⑱-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8호(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I01	⑱-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카목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타목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파목	K01	⑱-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하목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M01	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M03	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국외근로)	○
		M04	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500만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O01	⑱-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P01	⑱-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Q01	⑱-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내)(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Q02	⑱-2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내)	○
		Q03	⑱-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1회)	○
		Q04	⑱-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2회)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버목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서목	R10	⑱-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R11	⑱-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3(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	V01		사택 제공 이익	×
		V02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V0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	W01	⑱-41	임원등 할인금액 비과세	○
	구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5조	S01	⑱-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6의2	U01	⑱-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88의4제6항	Y02	⑱-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⑱-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⑱-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Y22	⑲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다목(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8조	T01	⑱-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T02	⑱-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9조	T30	⑱-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29조의6	T40	⑱-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T41	⑱-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T42	⑱-3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T43	⑱-39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8조의3	T50	⑱-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0조	T12	⑱-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⑱-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⑱-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투자자조합 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1) 퇴직연금계좌란의 퇴직연금 구분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2) 연금계좌저축의 연금저축구분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의 연금구분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 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세액공제금액란, 소득·세액 공제금액란 및 소득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 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란 **구분코드:**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5.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㉒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㉑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 성 명 (상 호)	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㉕ 유형	㉖ 계약 면적(㎡)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㉙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㉕ 유형란 **구분코드:**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란 및 ㉕ 유형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㉙ 전세보증금(원)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적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⑦ 자녀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지급받은 날	⑩ 지급받은 금액	⑪ 지급회차 [1 또는 2]	

작성방법

1.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됩니다.
3.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4.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5. ⑪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로 적습니다.
6.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해당1 / 미해당2		
국적		국적코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구분	국내	국외	합계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	⑨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여			
	⑭ 상여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⑯ 계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⑱ 국외근로	M0X			
	⑱-1 야간근로수당	O0X			
	⑱-2 보육수당	Q0X			
	⑱-3 출산지원금	Q0X			
	⑱-4				
	⑱-5				
	~				
	⑱-41 임원등 할인금액	W01			
	⑲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Ⅲ. 세액계산	㉑ 근로소득		차감납부세액	
	㉒		㉗ 소득세	
	㉓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㉘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㉔ 외국납부			
	세액공제 ㉕ 납세조합 [(㉓-㉔)× 3/100]		㉙ 농어촌특별세	
	㉖ 납부특례세액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4. . .>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증빙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해당 여부	⑬ 난임 시술비 해당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5세 이상자·6세 이하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⑫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해당 여부 및 ⑬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 6. 00.>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 부 처		⑪ 기부자			기부 명세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⑮ 기타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특례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재난선포 지역)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드		10	20	43	44	40	41	42	10,40,41	50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❹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4"
   라.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2"
   사.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으며,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 "44" ,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회계공시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란의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❹ 기부금 조정 명세"란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참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요 제출 오류

○ 레코드 길이 오류가 많음
- 2025년 귀속은 2,010바이트임

○ 레코드 구성과 순서를 정확하게 구현
- A(제출자) B(원천징수의무자) C(주현) D(종전) E(소득공제명세) F(연금저축등) G(월세액등) H(기부금조정명세) I(해당연도기부명세) K(출산지원금)
- 하나의 레코드에 종속되는 정보를 다른 레코드에 종속시키면 안됨

○ 금액, 세액 항목 등에 숫자만 입력되도록 프로그램에 반영

○ 성명, 상호 등에 특수문자를 기재 하지 않도록 유의, 레코드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
- 한글, 영문, 숫자, (), Space 만 가능

○ 전화번호에 특수문자를 기재 하지 않도록 유의

○ 원천징수의무자 및 제출자가 사업자등록번호(10)로 되어 있는지 확인바람
-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민등록번호인 경우는 극히 미미

(안내문구)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안내 문구 삽입바람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전산매체 수록 불가(오류로 판단)

○ 해당 귀속연도에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2곳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를 입력해야함
-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안내문구 필요

○ 중복제출 되지 않도록 안내 필요

○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안내 필요

≪오류 및 중복제출 방지 안내문 예시≫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복 제출
· 홈택스,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중복 제출
· 홈택스 부서사용자ID 등 다른 ID로 중복 제출
· 수시분으로 제출하고 연간합산분으로 다시 중복 제출

□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했다면 세금신고 삭제(또는 전자신고 삭제) 요청서로 이중자료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 또는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오류
· 해당 귀속연도에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2곳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를 반드시 입력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가 중복공제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

Ⅳ. 사업소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1. [소득공제]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 공제 구간 추가 및 공제한도 변경

<table>
<tr><th colspan="2">항목명</th><th>항 목 설 명</th><th>오 류 기 준</th></tr>
<tr><td>C49</td><td>㉞소기업·공제부금 소득공제</td><td>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 공제금액 : 납입액 전액
<table>
<tr><th>사업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
<tr><td>4천만원 ~ 6천만원</td><td>500만원</td></tr>
<tr><td>6천만원 ~ 1억원</td><td>4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td><td>① [C49]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11]='2')일 때: [C49] ≠ 0 이면 오류
③ [C33] ≤ 4천만원, [C49] > 6백만원이면 오류
④ 6천만원 ≥ [C33] > 4천만원, [C49] > 5백만원 이면 오류
⑤ 1억원 ≥ [C33] > 6천만원, [C49] > 4백만원이면 오류
⑥ [C33] > 1억원, [C49] > 2백만원이면 오류</td></tr>
</table>

3.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금액- 공제금액 변경

<table>
<tr><th colspan="2">항목명</th><th>항 목 설 명</th><th>오 류 기 준</th></tr>
<tr><td>C57</td><td>㊵자녀세액공제금액</td><td>자녀세액 공제인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1명: 25만원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2명: 55만원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3명 이상:
55만원 + (자녀세액 공제인원-2) × 40만원</td><td>① [C57] < 0 이면 오류
② [C56] = 0 일 때 [C57] ≠ 0 이면 오류
③ 비거주자([C11]='2')일 때: [C57] ≠ 0 이면 오류
④ 거주자([C11]='1')일 때:
㈀ [C56] = 1 일 때: [C57] >25만원 이면 오류
㈁ [C56] = 2 일 때: [C57] >55만원 이면 오류
㈂ [C56] >2 일 때: [C57] >55만원 + ([C56] - 2) × 40만원 이면 오류</td></tr>
</table>

4. [세액공제] 기부금- 유형코드 추가(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table>
<tr><th colspan="2">항목명</th><th colspan="2">항 목 설 명</th><th>오 류 기 준</th></tr>
<tr><td rowspan="7">F9</td><td rowspan="7">⑦유형
⑧코드</td><td>10</td><td>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td><td rowspan="7">기부유형코드 ('10','20','40','41','42','43','44') 아니면 오류</td></tr>
<tr><td>20</td><td>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td></tr>
<tr><td>40</td><td>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제1항(기부금대상민간단체기부금 포함, 종교단체기부금 제외))</td></tr>
<tr><td>41</td><td>종교단체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제1항)</td></tr>
<tr><td>42</td><td>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td></tr>
<tr><td>43</td><td>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td></tr>
<tr><td>44</td><td>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td></tr>
</table>

5. [세액공제] 기부금- 2025년 세액공제율 구간 삭제 및 공제율 변경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65	㊷특례기부금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과 15년 이후 이월된 특례 기부금 공제금액 합계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금액 - 특례기부금(15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 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15년 이후 이월된 일반기부금 포함)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순서에 맞춰 기부연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세액공제율(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 적용) - 2025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024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3)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 2023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021년, 2022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5 - 2020년, 2019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018년, 2017년, 2016년 (1) 2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015년 (1) 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5	① [C65]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11]='2')일 때: [C65] ≠ 0 이면 오류 ③[C65] > 특례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이면 오류 * 특례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 [F9]='10'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10'인 [F15]합계 × 15% • [F9]='10'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10'인 [F15]합계 - 1천만원} × 30% + 150만원 * 2025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24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2023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21년, 2022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2019년, 2020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18년, 2017년, 2016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 2015년 특례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적용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66	㊷우리사주조합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합계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특례기부금(15년이후 이월분 포함) 공제대상금액 × 30% · 세액공제금액 - 특례기부금(15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15년 이후 이월된 일반기부금 포함)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순서에 맞춰 기부연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세액공제율(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 적용) - 2025년 이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① [C66]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11]='2')일 때: [C66] ≠ 0 이면 오류 ③ [C66]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이면 오류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 [F9]='10','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42'인 [F15]합계 × 15% • [F9]='10','42'인 [F15]합계 > 1천만원 -[F9]='10'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42'인 [F15]합계 × 30% -[F9]='10'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1천만원 - [F9]='10'인 [F15]합계} × 15% + {[F9]='10','42'인 [F15]합계 - 1천만원} × 30%
C67	㊷일반기부금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과 14년 이후 이월된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공제금액 합계 - 공제한도: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 + MIN {(사업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 * 기부금등합계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 + 특례기부금(15년이후 이월분 포함)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금액 - 특례기부금(15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15년 이후 이월된 일반기부금 포함)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순서에 맞춰 기부연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세액공제율(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 적용) - 2025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024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3)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 2023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021년, 2022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5 - 2020년, 2019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018년, 2017년, 2016년 (1) 2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015년 (1) 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5	① [C67]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11]='2')일 때 [C67] ≠ 0 이면 오류 ③ [C67]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이면 오류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액 =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 [F9]='10','40','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40'인 [F15]합계 × 15% • [F9]='10','40','42'인 [F15]합계 > 1천만원, -[F9]='10','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40'인 [F15]합계 × 30% -[F9]='10','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1천만원 - [F9]='10','42'인 [F15]합계} × 15% + {[F9]='10','40','42'인 [F15]합계 - 1천만원} × 30%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 [F9]='10','40','41','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41'인 [F15]합계 × 15% • [F9]='10','40','41','42'인 [F15]합계 > 1천만원, -[F9]='10','40','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41'인 [F15]합계 × 30% -[F9]='10','40','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1천만원 - [F9]='10','40','42'인 [F15]합계} × 15% + {[F9]='10','40','41','42'인 [F15]합계 - 1천만원} × 30% * 2024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2023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21년, 2022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2019년, 2020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18년, 2017년, 2016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 2015년, 2014년 일반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적용

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포함 공제한도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F15	해당년도 공제금액 세액(소득)공제	·해당년도에 공제된 세액(소득) 공제금액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한도, 공제순서를 고려한 해당 연도 공제금액 입력 ·공제한도 : ①정치자금기부금 : 사업소득금액(최대10만원) ②고향사랑기부금(일반, 특별재난지역 합계) : MIN(사업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10만원) ③특례기부금 : 사업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금액 ④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사업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특례기부금(15년이후 이월분 포함) 공제대상금액) × 30% ⑤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 - 기부금등 합계액*)×10% + MIN {(사업소득금액-기부금등합계액*)×20%,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 * 기부금등합계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15년이후 이월분포함) 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순서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2015년이후이월특례기부금(2015→2016→2017→2018→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당해연도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2015년이후이월종교단체외일반기부금(2015→2016→2017→2018→2019→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당해연도종교단체외일반기부금→2015년이후이월종교단체일반기부금(2015→2016→2017→2018→2019→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당해연도종교단체일반기부금	① 해당년도 세액(소득)공제금액 < 0 이면 오류 ② 해당년도 세액(소득)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F13] 이면 오류 ③ [F9]='20'인 [F15]합계 > MIN([C33]사업소득금액, 10만원)이면 오류 ④ [F9]='43','44'인 [F15]합계 > MIN([C33]-([F9]='20'인 [F15]합계), 10만원)이면 오류 ⑤ [F9]='10'인 [F15]합계 > [C33]-([F9]='20','43','44'인 [F15] 합계) 이면 오류 ⑥ [F9]='42'인 [F15]합계 > {[C33]-([F9]='20','43','44','10'인 [F15] 합계)} × 30%이면 오류 ⑦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F9]='40','41'인 [F15]합계 > {[C33]-([F9]='20','43','44','10','42'인 [F15]합계)}×10%+ MIN{([C33]-([F9]='20','43','44','10','42'인 [F15]합계)) × 20%, [F9]='40'인 [F15]합계}이면 오류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F9]='40'인 [F15]합계 > {[C33]-([F9]='20','43','44','10','42'인 [F15]합계)} × 30%이면 오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개정 2026. . .>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		

수입금액	⑬ 발생처 구분	⑭ 법인명(상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발생기간(연·월·일)	⑰ 지급액(수입금액)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금액	사 업 별	⑱ 수입금액(⑰)	⑲ 적용소득률		⑳ 소득금액			㉑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계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24)합계							

㉒ 사업소득금액 (⑳)			㉟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㉓ 본 인	㊱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㊹ 결정세액					
		㉔ 배우자			기납부세액	㊺ 종(전) 근무지				
		㉕ 부양가족 (명)	㊲ 종합소득과세표준							
	추가공제	㉖ 경로우대 (명)	㊳ 산출세액			㊻ 주(현) 근무지				
		㉗ 장애인 (명)	㊴ 혼인세액공제		㊼ 차감 납부할 세액					
		㉘ 부녀자	㊵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명)						
		㉙ 한부모가족		출산·입양자 (명)						
㉚ 연금보험료공제			㊶연금계좌 세액공제							
㉛ 종합소득공제 계			㊷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㉜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금						
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특례기부금						
㉞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㊸ 표준세액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㊽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성방법

1.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3.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㊼ 차감 납부할 세액란: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소액 부징수)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㊼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5.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개정 2025. 3. 21.>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 (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 세액 집계현황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⑩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 외국인 (1 · 9)	⑮ 지급 년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 율	⑲ 소 득 세	⑳ 지 방 소 득 세	㉑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연간 소득인원란: ⑫ 소득자 성명(상호)란에 적힌 소득자의 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3.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 ⑯ 지급건수란에 적힌 건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4. ⑪ 업종구분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자영업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료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 기타자영업 업종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 · 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5. ⑭ 내 · 외국인란: 내국인인 경우는 “1”로, 외국인인 경우는 “9”로 적습니다.
6. ⑱ 세율란: “3%”로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로,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 외국인 (1 · 9)	⑮ 지급 년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 율	⑲ 소득세	⑳ 지방소득세	㉑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내 ·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 업 장 소 재 지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업종 구분		※ 작성방법 참조

⑬ 지 급			⑭ 소득 귀속		⑮ 지 급 총 액	⑯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⑰ 소 득 세	⑱ 지방소득세	⑲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⑪ 업종구분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자영업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료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 기타자영업 업종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 · 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4. ⑭ 내 · 외국인란: 내국인인 경우는 “1”로, 외국인인 경우는 “9”로 적습니다.
5. ⑱ 세율란: “3%”로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로,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 소득세	⑫ 농어촌특별세	⑬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 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 세소득	㉒ 필요경 비	㉓ 소득 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⑳(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⑧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㉓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⑰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⑳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㉓ 소득금액란은 ⑳ (연간)지급총액에서 ㉒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65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78	사례금
7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필요경비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2019.1.1. 이후	100분의 60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번호	⑭ 소득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⑯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⑰ 내·외국인	⑱ 지급연도	⑲ 지급건수	⑳ (연간)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	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소득세	㉗ 농어촌특별세	㉘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 297㎜(백상지 80g/㎡)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 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⑥일련번호	⑦작품코드	⑧지급 연월일			⑨ 총양도가액 (매매가액)	⑩지급액	⑪양도자		⑫양수자		⑬작가	⑭작품명	⑮재질	⑯크기 가로(㎜)×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⑰제작연도
		연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⑦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기타
작품코드	1	2	3	4	5	6	7	8	9	10

3. ⑮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61, 63, 65, 78 제외), 6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64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65 직무발명보상금, 71 상금 및 부상 72 광업권 등 73 지역권등 74 주택입주지체상금 75 원고료등 76 강연료등 77 종교인소득 78 사례금 79 자문료등 80 통신판매 대여소득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4, 68, 69, 71 ~ 77, 79, 80 제외)

⑩ 지급 연월일			⑪ 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비과세 소득	⑭ 필요 경비	⑮ 소득 금액	⑯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⑰ 소득세	⑱ 지방소득세	⑲ 농어촌특별세	⑳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⑫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⑬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5. ⑰란부터 ⑳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Ⅴ.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안내

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기타(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table>
<tr><th></th><th>종교인소득(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th><th>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th></tr>
<tr><td>과세소득</td><td colspan="2">종교인이 종교 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td></tr>
<tr><td>비과세소득</td><td>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td><td>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td></tr>
<tr><td>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
공제</td><td><table><tr><th>종교인이
받은금액</th><th>필요경비</th></tr><tr><td>2천만원 이하</td><td>80%</td></tr><tr><td>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td>1,600만원+
2천만원 초과의 50%</td></tr><tr><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td>2,600만원+
4천만원 초과의 30%</td></tr><tr><td>6천만원 초과</td><td>3,200만원+
6천만원 초과의 20%</td></tr></table>예) 수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인정</td><td><table><tr><th>총급여액</th><th>근로소득공제금액</th></tr><tr><td>500만원 이하</td><td>총급여액의 70%</td></tr><tr><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td>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td></tr><tr><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td>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td></tr><tr><td>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td></tr><tr><td>1억원 초과</td><td>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td></tr></table>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td></tr>
<tr><td>소득공제</td><td>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td><td>(좌 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td></tr>
<tr><td>세액공제</td><td>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td><td>(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td></tr>
<tr><td>근로·
자녀장려금</td><td>수급 가능</td><td>수급 가능</td></tr>
</table>

□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소득금액				
소득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人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600~2,000만 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과세표준				
(×) 세율(6~45%)				
산출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20만원~74만원 한도)		×	○
	혼인세액공제(50만원)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	○
	연금계좌[15%(12%), 600만원(퇴직연금 9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공제		○	○
	특별	보험료(12%·15%,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20%·30%,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만원) 한도)	×	○
		기부금(금액별 15%, 30%)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금액별 100/110, 15%·25%)	○	○
		고향사랑기부금(금액별 100/110, 15%·30%)	○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3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관련 전산매체 변경내용

1.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변경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66	㊱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세액 공제인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1명: 25만원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2명: 55만원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3명 이상: 55만원 + (자녀세액 공제인원-2) * 40만원	① [C66] < 0 이면 오류 ② [C65] = 0 일 때 [C66] ≠ 0 이면 오류 ③ 비거주자([C9]='2')일 때: [C66] ≠ 0 이면 오류 ④ 거주자([C9]='1')일 때: ㈀ [C65] ≦ 2 일 때: [C66] > [C65] × 25만원이면 오류 ㈁ [C65] > 2 일 때: [C66] > ([C65] - 1) × 55만원이면 오류 ㈂ [C65] > 2 일 때: [C66] > 55만원 + ([C65] - 2) × 40만원 이면 오류

2.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적용 확대

C81	㊳고향사랑기부금 (일반) 세액공제 금액	·공제대상금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공제한도 Min(종교인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2,000만원(일반+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금액 ①고향사랑기부금(일반+특별재난)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10만원 이하분 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 '일반' → '특별재난지역' 순으로 공제) ②고향사랑기부금(일반+특별재난)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100분의 30) → '일반'(100분의 15) 순으로 공제)	① [C81]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81] ≠ 0이면 오류 ③ [F9] = '43', '44'인 [F15]의 합 > 20,000,000이면 오류 ④ [F9] = '43'인 [F15]의 합 = SUM([F15]) ㈀ SUM([F15]) ≦ 10만원 : [C81] > (SUM([F15]) * (110분의 100)) 이면 오류 ㈁ 10만원 < SUM([F15]) ≦ 20,000,000 : [C81] > (90,909 + (SUM([F15])-10만원)× 15%) 이면 오류
C82	㊳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 세액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공제 대상금액 - 공제한도 Min(종교인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2000만원(일반+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금액 ①고향사랑기부금(일반+특별재난)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10만원 이하분 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 '일반' → '특별재난지역' 순으로 공제) ②고향사랑기부금(일반+특별재난)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100분의 30) → '일반'(100분의 15) 순으로 공제)	① [C82]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82] ≠ 0이면 오류 ③[F9] = '43', '44'인 [F15]의 합 > 20,000,000이면 오류 ④[F9] = '43'인 [F15]의 합 = SUM([F13], '43') [F9] = '44'인 [F15]의 합 = SUM([F13], '44') ㈀ [C81] = 0 : (a) SUM([F15], '44') ≦ 10만원 : [C82] > (SUM([F15], '44') * (110분의 100)) 이면 오류 (b) 10만원 < SUM([F15], '44') ≦ 20,000,000 : [C82] > (90,909 + (SUM([F15], '44') - 10만원)× 30%) 이면 오류 ㈁ 0 < [C81] < 90,909 : (a) SUM([F15], '44') ≦ (100,000 - SUM([F15], '43')) : [C82] > (SUM([F15], '44') × (110분의 100))이면 오류 (b) SUM([F15], '44') > (100,000 - SUM([F15], '43')) : [C82] > (90,909 - [C81]) + {SUM([F15], '44') - (10만원 - SUM([F15], '43'))} × 30% 이면 오류 ㈂ [C81] ≧ 90,909 : [C82] > (SUM([F15], '44') × 30%) 이면 오류

3.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종료

C83	㊲특례기부금_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과 15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 공제금액 합계 - 공제한도: 종교인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 공제대상금액 한도계산 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 포함 ·세액공제금액 - 특례기부금(15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15년 이후 이월된 일반기부금포함)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순서에 맞춰 기부연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세액공제율(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 적용) -'25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24년 이후 기부금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3)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23년 이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21년 이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5 -'19년 이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18년~'16년 이월기부금: 2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15년 이월기부금: 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5	① [C83]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83] ≠ 0 이면 오류 ③ [C83] > 특례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이면 오류 * 특례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 [F9]='10'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10'인 [F15]합계 × 15% • [F9]='10'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10'인 [F15]합계] - 1천만원} × 30% + 150만원 * 2015년 특례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적용 * 2018년, 2017년, 2016년 특례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천만원 이하는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 적용 * 2022년, 2021년 특례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적용 * 2023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24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2025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C84	㊳우리사주조합 세액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합계 - 공제한도: (종교인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이월분 포함) 공제대상금액) × 30% ·세액공제금액 - 특례기부금(이월된 특례기부금 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이월된 일반기부금 포함)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순서에 맞춰 기부연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세액공제율(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 적용) -'25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024년 이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3)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 '21, '22 기부금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5	① [C84]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84] ≠ 0 이면 오류 ③ [C84]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이면 오류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 [F9]='10','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42'인 [F15]합계 × 15% • [F9]= '10','42'인 [F15]합계>1천만원 1) [F9] = '10'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 = '42'인 [F15]합계 * 30% 2) [F9] = '10'인 [F15]합계 ≦ 1천만원 {1천만원 - [F9]='10'인 [F15]합계 } * 15% + {[F9]='10','42'인 [F15]합계 -1천만원 } * 30% * 2022년, 2021년 우리사주조합 세액공제액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적용 *2024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2025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C85	㊴일반기부_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과 15년 이후 이월된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공제금액 합계 - 공제한도:	① [C85]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85] ≠ 0 이면 오류 ③ [C85]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이면 오류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액 =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 +MIN{(종교인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종교인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 기부금등합계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 + 특례기부금(이월분 포함) 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금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계산 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 포함 · 세액공제금액 - 특례기부금(이월된 특례기부금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이월된 일반기부금 포함)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순서에 맞춰 기부연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세액공제율(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 적용) - '25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024년 이후 (1)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3)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 '23년 이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21년 이후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5 - '19년 이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18년~'16년 이월기부금: 2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15년 이월기부금: 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5	*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세액공제액 계산값 • [F9]='10','40','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40'인 [F15]합계 × 15% • [F9]= '10','40','42'인 [F15]합계>1천만원 1) [F9] = '10','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 = '40'인 [F15]합계 * 30% 2) [F9] = '10','42'인 [F15]합계 ≦ 1천만원 {1천만원 - [F9]='10','42'인 [F15]합계 } * 15% + {[F9]='10,40','42'인 [F15]합계 -1천만원} * 3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세액공제액 계산값 • [F9]='10','40','41','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41'인 [F15]합계 × 15% • [F9]= '10','40','41',42'인 [F15]합계>1천만원 1) [F9] = '10','40','42'인 [F15]합계 > 1천만원이면 [F9] = '41'인 [F15]합계 * 30% 2) [F9] = '10',40','42'인 [F15]합계 ≦ 1천만원 {1천만원 - [F9]='10','40','42'인 [F15]합계 } * 15% + {[F9]='10',40','41'.'42'인 [F15]합계 - 1천만원 } * 30% * 2015년, 2014년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적용 * 2018년,2017년, 2016년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천만원 이하는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 적용 * 2022년, 2021년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적용 * 2023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24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2025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월·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 소득
종교인소득	주(현)		– –	. . ~ . .		
	종(전)		– –	. . ~ . .		
			– –	. . ~ . .		

소득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⑲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구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⑳ 본인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㊶ 결정세액					
		㉑ 배우자		㉝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세액	㊷ 종(전) 근무지				
		㉒ 부양가족 (명)		㉞ 산출세액							
	추가공제	㉓ 경로우대 (명)		㉟ 혼인세액공제			㊸ 주(현) 근무지				
		㉔ 장애인 (명)		㊱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명)	㊹ 차감 납부할 세액					
					출산·입양자(명)						
		㉕ 부녀자		㊲ 연금계좌 세액공제							
		㉖ 한부모가족		㊳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㉗ 연금보험료공제					고향사랑기부금						
㉘ 종합소득공제 계					특례기부금						
㉙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㉚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㊴ 표준세액공제							
㉛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㊵ 외국납부세액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㊺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3.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⑭ 지급액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⑮ 비과세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㊳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 ㊹ 차감 납부할 세액란: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소액 부징수)에는 "0"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 부 처		⑪ 기부자			기부 명세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⑮ 기타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재난선포 지역)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3	44	40	41	42	10,40,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❹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 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
   라.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4"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바.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사.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2"
   아.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란: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으며,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회계공시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란의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❹ 기부금 조정 명세란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란,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란, ⑱ 공제대상금액란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Ⅵ. Paperless 연말정산 안내

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및 API 소개

□ 국세청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종이 문서 출력, 제출, 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Paperless 연말정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이하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등록하면, 소득공제금액 및 세액공제대상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연말정산 서류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프로그램」(이하 전자문서 API)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전자문서 API 이용 안내

□ 전자문서 API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hometax.go.kr)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 → (회사용) 전자문서 API 자료실 (로그인 필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반드시 최신 버전(64비트용: 자료실 번호 53, 32비트용 : 자료실 번호 24)의 전자문서 API 적용 요망

- 시점인증(진본확인) 서버인증서 변경과 관련하여 V2.03으로 갱신함('21.10.2)

□ 전자문서API에서 추출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의서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매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0년 귀속 종이 없는 연말정산 전자문서 정의서

< 「종전 연말정산」과 「Paperless 연말정산」 비교 >

구 분		종전 연말정산	Paperless 연말정산
근로자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등록
	그 외 자료	▪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종이문서로 제출	▪ 좌 동
	신고서 작성	▪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수집한 자료를 수동 입력	▪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등록(업로드)과 동시에 연말정산 서류 자동 작성 ▪ 그 외 종이 영수증 자료는 근로자가 수동 입력
회사	소프트웨어 설치	▪ 관련 없음	▪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국세청 제공 '전자파일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API)를 설치
	영수증 금액 대조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간 상호 대조 필요	▪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금액 대조 불필요 ▪ 공제자료 외 종이 영수증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금액과 상호 대조 필요
	공제요건 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공제항목별 요건 충족 확인	▪ 좌 동
	종이사용	▪ 전체 근로자 1억 5천장 종이 사용	▪ 매년 90억원 종이 사용 비용 절감
	문서보관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문서로 보관	▪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보관 ▪ 그 외 자료는 종이문서로 보관

3 전자문서 API 종류

□ 위변조 여부 검증용 API

○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API

○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의 경우 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 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경 확인 후 제한적으로 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 권고
Windows	dll 파일	dll 및 관련 파일들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 데이터 추출용 API

○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추출용 API

○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의 경우 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 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경 확인 후 제한적으로 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 권고
Windows	dll 파일	dll 및 관련 파일들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 추출 데이터는 XML과 SAM 두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나, 세법 변경에 의한 형식수정 등에 유연한 XML 사용 권고

※ XML, SAM 정의서도 [전자문서 API]와 함께 게시

4 연말정산 공제자료 전자점자 문서 제공

□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 문서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제자료 전자점자 파일(.BRL)을 제공

※ 점자 규정, 점자도서 점역 및 출판지침 준수

5 연말정산 공제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일괄 제공하여 회사가 연말정산

① 근로자 명단 등록		② 근로자 확인		③ 자료 다운·업로드
회사 → 국세청 (소속 근로자 명단등록)	⇨	근로자 →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	국세청 → 회사 (공제자료를 다운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25.9.25.~ '26.1.10.)		('25.12. 1.~'26.1.15.)		('26. 1.17 또는 1.20 ~3. 10.)

① (회 사) 일괄제공 신청 및 동의한 근로자 명단과 일괄제공 받는 날짜를 홈택스에 등록
 – 올해부터 일괄제공 받는 날짜를 1.17.과 1.20. 중 선택 가능
② (근로자)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
③ (국세청) 신청을 확인한 근로자 자료를 홈택스로 구축하여 회사에 제공
④ (회 사) 공제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이행
⑤ (회사·근로자) 근로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완료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외하고 일괄제공되며, 의료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

- 일괄제공 업무수행자 등록 화면(안)에서 일괄제공 받는 일자 선택 가능

□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 등록 ('25.9.25.~'**26.1.10.**)

○ 사업자로 로그인하여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메뉴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자명단을 등록

- ① 화면에서 직접 입력, ② 국세청이 제공한 엑셀서식에 입력한 후 업로드, ③ 전년도 명단을 동일하게 등록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용)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일괄제공될 압축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가능

○ 기장대리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선택 가능

□ 근로자의 홈택스 확인(동의)하기 ('25.12.1~'**26.1.15.**)

○ 회사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근로자로부터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1회 홈택스를 통해 확인**

- 이직, 퇴직 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동의를 철회해야함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용)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

※ (모바일)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자료 확인(동의)

○ 회사에서 명단제출된 근로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확인(동의)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자동 안내함

□ 일괄제공 PDF 내려받기 (**'26.1.17. 또는 1.20.**~'26.3.10.)

○ 홈택스에서 **1.15.까지 신청을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별로 묶어 1회 생성**하고, 압축파일을 **1.17. 또는 1.20.**부터 홈택스에 제공

① 일괄제공받는 날짜를 1.17.로 선택한 경우 1.17.부터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가능

- 다만,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순차 제공

②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용)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기

- 회사가 ①**일괄제공 받는 날 하루전**까지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한 경우, ②**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① 회사가 일괄제공 받는 날짜가 1.17.인 경우 1.16.까지(1.20.인 경우 1.19.까지)

② '25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인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하고 일괄 제공. 다만, 의료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

○ 회사가 세무대리인(기장대리)에게 일괄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와 동일하게 세무대리인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음(신고대리는 불가)

※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내려받기

□ 연말정산 공제자료 서비스와 일괄제공 서비스의 비교

□ 연말정산 간편제출 서비스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의 비교

		간편제출	일괄제공
회사	이용 기간	1.3. ~ 3.11.	9.25. ~ 1.10.(등록) ~ 3.10.(관리 등)
	회사 명단 등록	매년 등록	매년 등록
근로자	이용 기간	1.18. ~ 3.11.	12.1. ~ 1.15.
	홈택스 확인 절차	매년 제출	최소 1회 확인(동의)
	제공정보 선택	선택한 정보만 회사에 제출	선택 불가
	제출 취소	제출자료 회수 가능	회수 불가능

□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이용방법

○ 연말전산 서비스를 부서별(그룹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입하며, 반드시 사업장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대표사업장ID를 가진 사용자(주사용자)가 신청한 아이디에 대해 승인함

[부서사용자ID 신청]

① 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클릭

② [부서사용자ID 신청] → **[연말정산자료제출ID 신청하기]** 클릭

③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 **동의함** 체크

④ [사업자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버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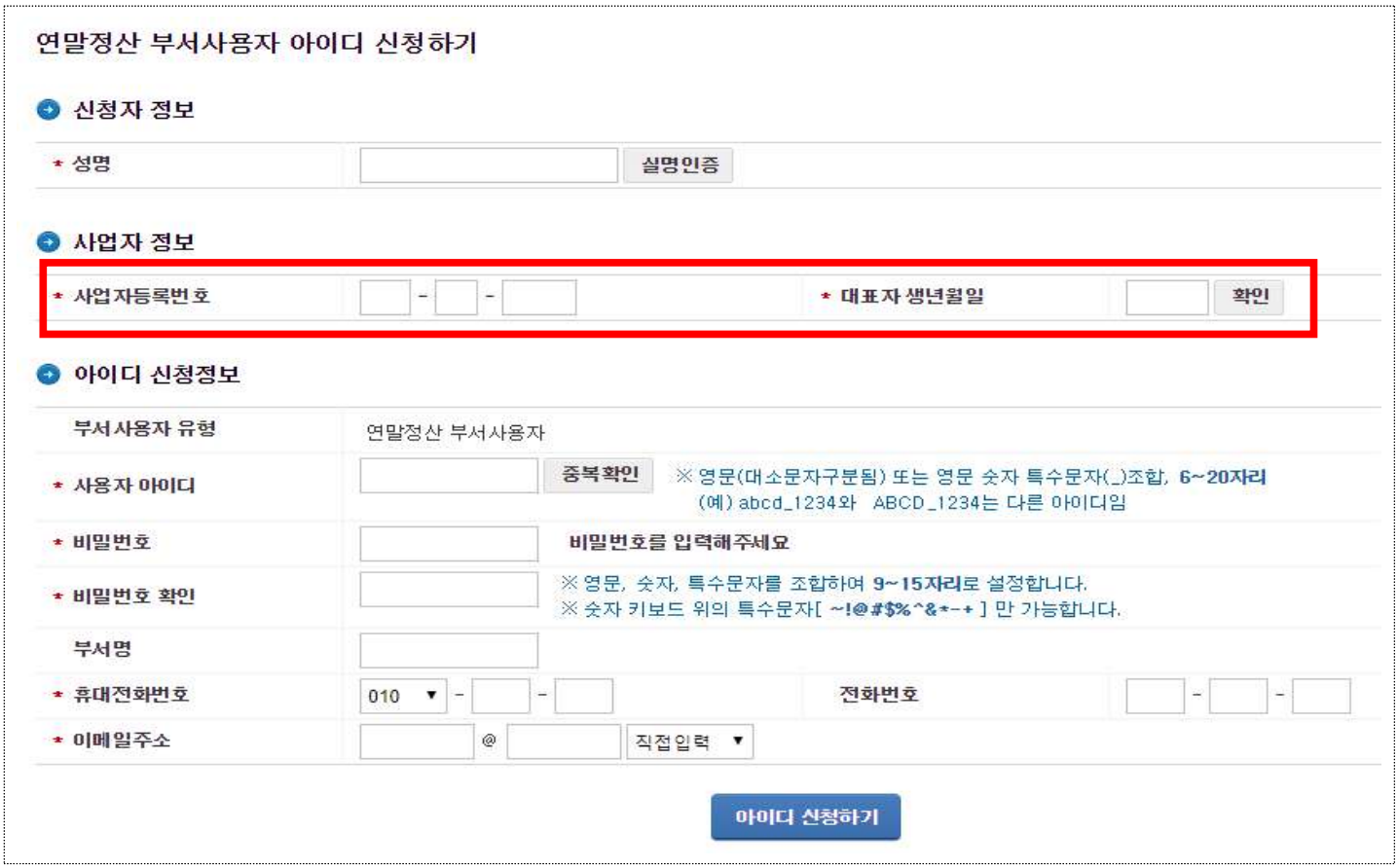

⑤ 주사업자ID로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관리 클릭

⑥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 → 조회된 목록을 확인 후 **승인처리**

<참고> 편리한 연말정산

가. 편리한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사전에 연말정산 정보* 제공

  * 11월중에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제공, 개인별 공제한도 안내,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 함께 제공

○ 예상세액 자동계산

-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예상세액을 미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부부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 공제항목을 확인·선택하면 그 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반영

○ 간편 제출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대상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 접근경로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 클릭	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④ 편리한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는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 근로자

홈택스 회원	홈택스 비회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 모바일에서는 자주 찾는 메뉴의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 ③ 연말정산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 모바일에서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

○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회사용)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함

  ※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 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사항,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는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비고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분 프리필드 서비스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

  *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지정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이 신청가능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총급여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 총급여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등을 입력해야 함.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함

  *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위 절차 중 한 가지만 해도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여 예상세액 자동계산	최근 3개년 항목별 추이 확인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2단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 (3단계) 최근 3개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 확인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 간편제출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근로소득 (법령)	백신기	044-204-3349	baek2004@nts.go.kr
간소화 서비스 개편 일괄제공	오현정	044-204-3343	ohj9664@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법령 및 실무)	최 민	044-204-3344	cmtax8806@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전산시스템)	이창인	044-204-2584	ntssc2016@nts.go.kr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김지선	044-204-2585	shine2822@nts.go.kr
근로소득 직접작성 (홈택스)	유민경	044-204-2589	minrud212@nts.go.kr
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	김하연	044-204-2588	khy0202@nts.go.kr
종교인 소득 (법령 및 실무)	유자연	044-204-3345	ynature124@nts.go.kr
종교인 소득 (전산매체 제출)	안영훈	044-204-2590	spy007@nts.go.kr
사업·기타소득 (법령 및 실무)	유자연	044-204-3345	ynature124@nts.go.kr
사업·기타소득 (전산매체 제출)	안영훈	044-204-2590	spy007@nts.go.kr
사업연말 (전산매체 제출)	구세윤	044-204-2587	qqwwee7096@nts.go.kr